

KOICA 프로젝트 봉사단(8기) 모집 안내

2026. 5. 15.(금)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모집팀

- 목 차 -

아래 목차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1. 모집 개요
2. 지원 자격
3. 선발 일정
4. 선발 절차 및 전형 안내
5. 유의사항(필독)
6. 기타사항

[첨부1] 증빙서류 업로드 안내 1부

[첨부2]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증빙서류 안내 1부

[첨부3] 적합도 검사 안내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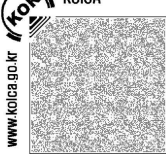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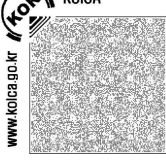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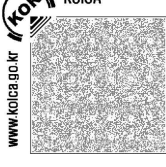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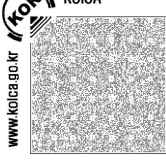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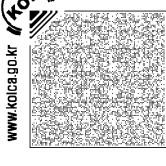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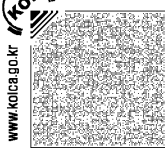
[첨부4] 가산점 부여 기준 1부

[첨부5] 서류심사 불합격 기준 1부

[첨부6] 모집·선발 이의신청서 양식 1부

[첨부7]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제도 관련 기타 안내 1부

[보이스아이 QR 코드]

				
0p	1p	2p	3p	4p
				
5p	6p	7p	8p	9p
				
10p	11p	12p	13p	14p
				
15p	16p	17p	18p	19p
				
20p	21p	22p		

[지원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항 목	체 크	마감일자
▲ 지원서 접수(학력) - 지원서 작성 시 기재한 학력과 업로드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가? (6개월 이내, 발급된 학력(졸업, 재학, 휴학)증명서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5. 26.(화) 16시까지
▲ 지원서 접수(경력) - 지원서 작성 시 기재한 경력 기간과 경력증명서 증빙자료 상 내용이 일치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input type="checkbox"/>	
▲ 지원서 접수(자격증) - 지원서 작성 시 기재한 자격증과 업로드한 증빙자료는 일치하는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되지 않는 자격증 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 업로드 "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되는 자격증 의 경우는 " 동의 " 여부 체크 확인 필수)	<input type="checkbox"/>	
▲ 지원서 접수(가산점) -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 증빙자료를 기재 후 정확히 업로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지원서 접수(자기소개서 작성) - 400바이트(650자) 이상으로 작성했는가?	<input type="checkbox"/>	
▲ 중복지원 확인 - KOICA 일반봉사단 및 KOICA 자문단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온라인) 적합도 검사 - 지원서 접수 후, 온라인 적합도 검사를 안내된 방식으로 완료하였는가? (아이디는 '이름+휴대폰 번호 뒷 4자리', 비밀번호는 '휴대폰 번호 뒷 4자리'로 로그인)	<input type="checkbox"/>	5. 29.(금) 16시까지

※ 반드시 본문 내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프로젝트 봉사단 정의 및 목표]

- **(정의)** KOICA가 발굴한 다년간 사업에 우리 청년들이 ODA 현장 실무를 수행하며, 협력국 지역사회 및 기관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을 통해 팀 단위로 파견하는 성과 중심의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그램
- **(목표)** KOICA 개발협력 전문성과 민간의 분야 전문성을 결합하여 우리 청년에게 ODA 일 경험을 제공하며 협력국 지역 및 기관의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함

□ **모집인원: 172명**

<필독 사항>

프로젝트 봉사단은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수요'와 '연령 무관 수요'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요별 자격요건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가 아닌 지원자가 '청년 대상 수요'에 지원한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활동기간: 사업별 활동기간 상이(4~5개월) / [국내교육 기간 1개월 포함/연장 없음]**
 - 귀국 예정 시기: 2027년 1월~2월 중

□ **모집내용: 13개 사업(11개 국가)**

NO	사 업 명	모집인원(명)
1	가나 코포리두아시 ICT 교육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0
2	도미니카공화국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 정서 및 심리 치유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2
3	르완다 중등학교 ICT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9
4	르완다 청소년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아웃리치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8
5	몽골 관광인력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3
6	방글라데시 직업훈련원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0
7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시 아동권리 중심 교육지원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2
8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IT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26
9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입원환아의 건강증진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4
10	캄보디아 시청각 장애 학습환경 개선 및 국립특수교육원 교사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8
11	콜롬비아 보고타 국립직업훈련학교 혁신창업교육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2
12	파라과이 노인복지센터 운영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12
13	필리핀 문틴루파 지역 영유아 공공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6

※ 자세한 활동 내용은 '사업별 세부활동내역' 및 '지원자 참고자료(조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OICA 봉사단 홈페이지 ▷ 모집선발 ▷ 모집 공지사항 ▷ KOICA 프로젝트 봉사단(8기) 모집공고
 ※ 상기 모집 수요는 협력국 또는 파견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 직종: 10개 직종

구분	직종	비고
청년	국제개발	국제개발 직종으로 통합 선발 (세부 내용 '사업별 세부활동내역' 참고)
연령무관	간호	<u>직종별 교차지원 불가</u> , 일부 수요의 경우 일정 수준의 전문성 요구할 수 있음 (세부 내용 '사업별 세부활동내역' 참고)
	관광	
	교육일반	
	국제개발	
	보건의료 일반	
	음악교육	
	청소년개발	
	컴퓨터교육(일반)	
	특수교육	
	한국어교육	

2 지원 자격

□ 공통자격 :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제3조(자격요건) 등에 부합하는 자

◎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제3조(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1.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2026. 5. 26.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2007. 5. 26. 이전 출생자)
- 협력국 요청에 따라 일부 수요/국가별 연령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해외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기저질환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프로젝트 봉사단 8기 선발 과정에서 신체검사 통과 필수)
※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
- 아래한글, 워드, 엑셀 등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 및 전자메일을 통한 수발신 업무가 가능한 자

3. 파견국이 요청하는 자격 기준(자격, 경력 등)에 해당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5. 남자는 군 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현지활동 종료일 기준 병역 의무 관련 해외 체류에 제한이 없는 자

- 군 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에 따라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에 따라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절차에 따른 국외여행이 가능한 자

◎ 우리 정부와 파견국 출입국 관리기준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등에 부합하는 자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관용여권 또는 일반여권으로 파견예정으로, 국내교육 대상자에 한해 관련 사항 상세 안내

3. 파견 국가별 적정 활동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협력국 출입국 또는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
-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연장자 및 12~64세 면역저하자·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파견 국가별 출국 요건에 따라 추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수 요구될 수 있음

3 선발 일정

구분	내용	일정
1차 전형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5. 15.(금)~5. 26.(화) 16:00까지
	[온라인] 모집 설명회	5. 20.(수) 14:00 (WFK 유튜브 채널)
	[온라인] 적합도 검사	5. 27.(수) 09:00~5. 29.(금) 16:00까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6. 16.(화)
2차 전형	면접	6. 26.(금), 6. 27.(토) / 사업 및 직종별 상이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7. 7.(화)
3차 전형	[온라인] 신용조회	7. 8.(수)~7. 10.(금)
	[온라인]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출	
	신체검사(초검) ※ 토요일 오전 검진 포함, 일요일 제외	(50세 미만) 7. 8.(수)~7. 11.(토) (50세 이상) 7. 10.(금)~7. 14.(화)
	신체검사 재검(해당자에 한함)	7. 22.(수)~7. 25.(토)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8. 12.(수)
교육	[대면, 집합교육] 국내교육	(1차) 9. 7.(월)~9. 23.(수) (2차) 10. 5.(월)~10. 19.(월)
출국	현지파견	교육 종료 후 사업별 순차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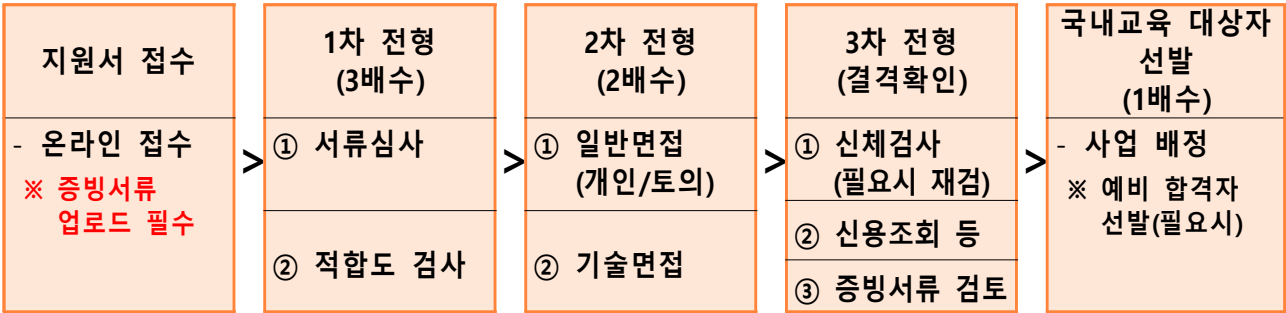
※ 상기 모집·선발 일정은 KOICA 및 협력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KOICA 봉사단 홈페이지(kov.koica.go.kr) 및 KOICA 홈페이지(koica.go.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발표 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발표 후 문자 및 메일 발송 예정입니다.

※ 국내교육 미수료(평가 기준 미달 시) 최종 파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선발 절차 및 전형 안내

□ 선발 절차



□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5. 15.(금)~5. 26.(화) 16:00까지
접수방법	KOICA 봉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봉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 모집선발 → 지원서 작성 및 확인 →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8기' 선택 →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완료 후 '최종제출' 클릭

* 유의 사항 *

- 기한 내 최종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수요별 연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가 지원할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학력, 자격증, 경력, 가산점 등 기재하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첨부 시 불인정) [\[첨부1\] 증빙서류 업로드 안내 \[클릭\]](#)
 - 지원서상 **희망 사업(=국가)은 동일 직종에 한하여 최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면접심사) 1지방 기준으로 심사 예정이며, 필요시 차순위 지방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KOICA 프로젝트봉사단, KOICA 일반봉사단, KOICA 자문단 간 중복지원 불가
 - ※ 타 유형에 지원 시에는 **기존 지원 철회 필수**
- 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KOICA 봉사단 홈페이지(kov.koica.go.kr) 게시판 '지원서 제출 취소요청' 상의 양식에 따라 요청글(비밀글)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 마감일 마감 직전에는 지원량이 많아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미리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PC 환경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마감기한 이후 제출이 불가하며, 접수기한 이후 개별 구제는 불가합니다.
- '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로 처리 후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전형 (3배수 선발)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 적합성 (전공, 경력, 자격증), 가산점 및 지원 자격 결격사유 여부 심사 [첨부4] 가산점 부여 기준, [첨부5] 서류심사 불합격 기준 [클릭] - 지원서 상 1지망 기준으로 서류심사 예정 - 지원서 상 1지망 기준 사업수행기관에서 심사 예정 - 필요시 차순위 지망 기준으로 서류심사 가능 • 지원서에 작성하고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항목만 인정 • 학점인정제 MOU 체결 대학 추천 학생은 서류심사 면제(적합도 검사는 응시 필수)
적합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도 검사 사이트: koica.wiselection.com/?867/1/26 • 검사기간: 2026. 5. 27.(수) 09:00~5. 29.(금) 16:00까지 • 검사방법: 온라인 검사 (총 450문항, 50분간 진행) • 평가항목: 검사 신뢰도, 부적응성, 임상요인, 인성검사 • 불합격 처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별 기준 미달 시 - 기한 내 미응시 또는 미완료 시 응시 포기로 간주 • 적합도 검사 매뉴얼 확인(홈페이지 붙임 파일 확인) [첨부3] 적합도 검사 안내 [클릭] • 적합도 검사 관련 문의처(메일): recruit@orp.co.kr <p>※ 제목: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8기 적합도검사 관련] 기재 필수</p>

□ 2차 전형 (2배수 선발)

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유형: 일반면접(개인/토의), 기술면접 실시 • 심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면접: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 현지 적응력 등 소양 평가 - 기술면접: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적합한 기술과 전문지식 보유 여부 평가 - 지원서상 1지망 기준으로 면접심사 예정 - 지원서상 1지망 기준 사업수행기관에서 심사 예정 - 필요시 차순위 지망 기준으로 면접심사 가능 • 외부위원 50% 이상 구성
면접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체류자에 한하여 온라인 면접(ZOOM) 실시 예정 • 아래 표 참고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배려층 해당자 5점 가산점 부여 [첨부4] 가산점 부여 기준 [클릭] • 학점인정제 MOU 체결 대학 추천 학생 5점 가산점 부여

일반면접 + 기술면접 + 가산점 합산 60점 이상자 중 → 고득점 순으로 2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2배수 초과 가능

구 분	배 점	심사 항목
일반면접	개인면접	지원동기(10점), 태도(10점), 적응력(10점) 친화력(10점), 소통력(10점)
	토의면접	
기술면접	50점	이론능력(10점), 응용력(20점), 직종 적합성(20점)
합계	100점	

□ 3차 전형 (아래 'A, B, C' 3개 모두 필수 진행)

신체검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지정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검사 및 판정 • 초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검사 진행 → 재검사 통과자에 한해 사업 배정 대상으로 선정
신용조회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신용 관련 결격사유 확인 • 채무 불이행 등 특이사항 발견 시 불합격 • 기한 내 신용정보 제공 동의 및 사이렌키 미발급 시 자동 불합격
기타 결격사유 확인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온라인 제출 • 지원서에 기재한 증빙서류 누락, 허위기재 등 발생 시 불합격 처리

3차 전형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 선발

□ 국내교육 대상자 선발 (1배수 선발)

사업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3차 전형 합격자 • 내용: 지원자별 사업 배정 진행 • 배정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원자의 자격요건과 파견 수요의 요구조건 부합성 ② 지원자의 파견 희망 사업 및 직종 ③ 2차 전형(면접심사) 고득점 순
------	--

사업 배정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교육 대상자 선발

□ 예비 합격자 (필요 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전형 합격자 중 1배수 이내 미포함 인원
적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교육 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까지 유효 → 2026. 8. 19.(수) 이후 예비 합격자 자격 자동 소멸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합격자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적격자 우선 충원

5 유의사항(필독)

지원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의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단신부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므로, 국내 가족의 생계,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과 동거 불가)
정치/종교/영리 활동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적 활동을 금합니다.
신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소속된 지원자는 소속기관과 협의(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하여 국내교육 시작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퇴직, 휴직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교육부 훈령 제98호(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따라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 처리는 해당 소속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KOICA 봉사단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해외봉사단에 선발될 경우 '연수휴직'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시·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KOICA 봉사단 모집선발 공고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 전형부터 국내교육 및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일정은 개인사정에 의해 조정이 불가합니다. 개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배정 후 합격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일정 연기는 불가하며, 국내교육 미실시자는 파견 포기로 처리됩니다.
합격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배정까지 통과하였더라도 과거 봉사단 활동 평가(부적합) 및 제재 조치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 또는 합격 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준비 중 국가별 비자 발급 시 개인별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파견 시기 변경 또는 파견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사회적 배려층</p>	<p>✓ 사회적 배려층 해당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 조항신설('23.10.6.)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도 의료급여 수급자격 중지 없이 KOICA 봉사단 활동 가능 • (적용) KOICA 봉사단 활동증빙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속 지자체로 제출
<p>관련규정</p>	<p>✓ KOICA 해외봉사단 모집선발 관련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s://www.ali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6 기타사항

□ 선발전형 이의신청 절차

<p>신청기간</p>	<p>1차/2차 전형 발표 후 각 3일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p>※ 발표일 포함 기준</p>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kov1@koica.go.kr <p>※ 아래 항목 모두 기재 시 유효</p> <p>지원번호, 성명, 지원직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신청내용, 자필서명</p>
<p>처리 예외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한 선발 제도·절차 문의 • 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심사 관련자 등) 및 지적재산권 관련 위반 사항 • 단순 결과 및 불합격 사유 공개 요청 • 일반적인 항의 • 기타 위 항목에 준하는 경우
<p>문의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1588-0434(연결 1번) • 이메일 : kov1@koica.go.kr • 상담시간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공휴일 제외)

[첨부1] 증빙서류 업로드 안내

□ 기 간: 2026. 5. 15.(금)~5. 26.(화) 16시까지(해당 기간 이후 제출 불가)

□ 방 법: 학력·경력·자격증 등 전자문서(PDF, JPG 또는 PNG)의 형태로
지원서 제출 시 함께 업로드

□ 목 록

구 분	증빙서류
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내 기재한 모든 학력 증명서 업로드(졸업, 졸업예정, 재학증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단, 해외 학력 증명서의 경우 추가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6개월 초과분 인정 ※ 영어 외 현지어 증명서의 경우 번역본 및 공증 제출 필수 ※ 학력 증명서 내 기재된 학교명은 블라인드 위배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 시 학교명, 학과, 성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로드
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직종 관련 경력(무급 경력 포함) 증명서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단, 해외 경력 증명서의 경우 추가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6개월 초과분 인정 ※ 영어 외 현지어 증명서의 경우 번역본 및 공증 제출 필수 ※ 기관 발급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명, 직인/날인, 경력 기간(입사일, 퇴사일), 발급일이 명확히 표기된 서류만 인정 (경력 불명확하게 기재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자격증/ 면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직종 관련 자격증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업로드 ※ 단, 일부 자격증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조회 가능 <p>【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가능 자격증/면허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보건복지부)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증</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자격증/면허증 해당 시 지원서 내 ①자격증 항목에 기재한 후 ②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증빙 여부 체크 필수이며, 해당 자격증은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불가능한 자격증/면허증은 반드시 지원서 내 기재한 후 증빙서류 첨부 필수, 미첨부 시 불인정
가산점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사항(가산점) 증빙서류 목록 참고하여 증빙서류 제출
병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지원자에 한함, 제출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예정

□ 우대사항(가산점) 증빙서류 목록

구 분		증빙서류	참조
사회적 배려층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중 1부	[첨부2] 참조 클릭
	장애인	장애인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1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행정복지센터 발급) 1부	
	다문화가족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1. 구직등록확인서 1부 2.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 1부 3.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졸업증명서 등) (만 34세 이하)	
	여성가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없는 경우),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배우자 없는 경우, 해당자에 한함), 실종신고서(배우자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배우자 있는 경우) 등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자녀)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1부	
	자립준비청년 (舊보호종료아동)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어	영어	영어 공인어학증명서 1부	[첨부4] 참조 클릭
	제2외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제2외국어 자격증 1부, 제2외국어 자격증 진위확인서 1부(국외 응시시험에 한함)	
봉사활동	사회봉사 200시간	봉사활동 확인서 1부(확인서 내 활동 시수 기재 필수)	
	해외봉사 3개월 이상	봉사활동 확인서 1부(확인서 내 활동 기간 기재 필수)	
ODA 일반 자격증 (ODA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		자격증 사본 1부	
ODA 교육원 교육 수료증		수료증 사본 1부	

[첨부2]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증빙서류 안내

※ 해당자는 **지원서 제출 기간(5. 15.(금)~5. 26.(화), 16:00) 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특례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대상에 'KOICA 해외봉사단 참가자 추가 적용(시행일 2023. 10.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행정복지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증명서 1부(행정복지센터 발급)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취득증명서 1부(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법	<p>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p> <p>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직등록확인증 2. 고용보험가입 자격이력내역서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예시)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p>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p>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p> <p>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9.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자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3] 적합도 검사 안내

- 기 간: 2026. 5. 27.(수) 09:00~5. 29.(금) 16:00까지
- 대 상: KOICA 프로젝트 봉사단(8기) **지원서 제출 완료자 전원**
- 검사항목: 총 450개 문항('예/아니오' 단답형 선택)
- 소요시간: 약 50분 소요(검사 시작 후 타이머 작동, **50분 경과 시 자동 종료**)
- 검사방법

1단계	<p>[koica.wiselection.com/?867/1/26] 접속</p> <p>※ Google Chrome 브라우저 주소창에 URL 붙여넣기 ※ 검사 페이지 Chrome에 최적화, Chrome 설치 후 검사 진행</p>
↓ ↓ ↓	
2단계	<p>로그인</p> <p>※ 아이디: 본인 이름+연락처 뒤 4자리 비밀번호: 연락처 뒤 4자리(지원서 작성 기준) 예) 이름: 홍길동5678, 연락처: 010-1234-5678인 경우, 아이디: <u>홍길동5678</u> / 비밀번호: <u>5678</u></p> <p>※ 로그인 시 접속 횟수 최대 3회로 제한, 반드시 50분간 안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 진행</p>
↓ ↓ ↓	
3단계	<p>적합도 검사 응시</p> <p>※ 로그인 후 "주의사항" 화면의 안내 내용 숙지 후 검사 진행 ※ 검사 시간 50분으로 제한, 50분 경과 시 자동 종료(일시정지 불가) ※ 적합도 검사 미응시자는 서류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p>

□ 유의사항

- 적합도 검사는 정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답변을 빠르게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검사 시작 후에는 **중간 저장이 불가하며, 로그인 접속 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작 전 반드시 50분간 방해받지 않는 환경인지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서버 오류 등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에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하므로, 가급적 **2026. 5. 29.(금) 오전까지** 검사를 마치시기를 권장합니다.

[첨부4] 가산점 부여 기준

구 분	가산점		비 고		
	서류	면접			
사회적 배려층 ※ 가점 상한 없음 ※ 증빙자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 변동 예정이므로, 모집 기수별 모집 안내문 내 별도 적용 기준 안내 예정	차상위계층	5점	5점	[첨부2]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증빙서류 안내 [클릭]	
	장애인	5점	5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5점	5점		
	다문화가족	5점	5점		
	한부모가족	5점	5점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5점	5점		
	여성가장	5점	5점		
	보훈보상대상자	5점	5점		
	국가유공자(자녀)	5점	5점		
자립준비청년(舊보호종료아동)	5점	5점			
외국어 ※ 최대 5점 이내 가점 인정, 중복 가점도 5점 초과 불가 - (예시) 영어 3점 + 프랑스어 3점 해당 시, 총점 5점 가점 부여 ※ 성적 유효기간: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국내 인정 정기 시험 성적 ※ 사유를 불문하고 진위여부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	영어 ※ 인정: TOEIC, New TEPS, TOEFL/IBT, G-TELP(level 2)	3점	-	TOEIC 830~920점 New TEPS 324~393점 TOEFL/IBT 95~107점 G-TELP(레벨 2) 80~92점	
		5점	-	TOEIC 921~990점 New TEPS 394~600점 TOEFL/IBT 108~120점 G-TELP(레벨 2) 93~99점	
	프랑스어 ※ 인정: DALF, DELF, FLEX	3점	-	DELF B1 FLEX 2A, 2B	
		5점	-	DALF 모두 인정 DELF B2 이상 FLEX 1A, 1B, 1C	
	스페인어 ※ 인정: DELE, FLEX	3점	-	DELE B1 FLEX 2A, 2B	
		5점	-	DELE B2 이상 FLEX 1A, 1B, 1C	
	러시아어 ※ 인정: TORFL, FLEX	3점	-	TORFL 1단계 FLEX 2A, 2B	
		5점	-	TORFL 2, 3, 4단계 FLEX 1A, 1B, 1C	
	아랍어 ※ 인정: 아랍어 전공	3점	-	아랍어 전공 학사	
		5점	-	아랍어 전공 석사 이상	
	기타 경력 ※ 가점 상한 없음	사회봉사 200시간	5점	-	관련 증빙 제출
		해외봉사 3개월 이상	5점	-	관련 증빙 제출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		5점	-	관련 증빙 제출	
ODA교육원 교육 수료증 소지자		2점	-	관련 증빙 제출	
학점인정제 대학 추천	학점인정 MOU 체결 대학 추천 인재	-	5점		

[첨부5] 서류심사 불합격 기준

구분	상세내용		불합격 기준	제재기간
1. 과거 현지활동 중지 또는 평가 저조자	중도계약해지	질병 또는 부상 외 개인사유 일체 (가족 병간호, 현지 부적응, 경조사, 취업 및 복직 등)	불합격	3년
	징계	자격상실(계약해지)	불합격	영구
		경고	불합격	5년
		주의	불합격	3년
활동 평가	미흡	불합격	2년	
2. 과거 국내교육 시 중도 퇴교한 자	입교 포기	질병 또는 부상 외 개인사유 일체 (가족 병간호, 가족반대 신변 정리 불가 등 개인사유 일체)	2회 누적 시, 불합격 (2024. 1.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	영구
	교육 중도포기 또는 출국포기	질병 또는 부상 외 개인사유 일체 (가족 병간호, 가족반대 신변 정리 불가 등 개인사유 일체)	2회 누적 시, 불합격 (2024. 1.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	영구
	교육 중 강제 퇴교 ※ 동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제3호 관련		불합격	영구
3. 지원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지원서 불성실	지원서 항목 미작성 비속어 사용 봉사단 사업과 무관한 문장 나열 문장·단어 단순 반복 등	불합격	해당 모집 기수
	지원서 영문 기술		불합격 ※ 고유명사 영문기술 제외	해당 모집 기수
4. 기타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필수 자격증 미소지(해당직종에 한함), 기타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		불합격	해당 모집 기수

※ 제재기간 기준 : 최종 계약해지일로부터 신규지원 접수마감일까지

※ 질병 또는 부상 판단 기준 : 단원이 KOICA 위탁 긴급의료서비스 기관의 한국 내 치료 판단에 따라 일시귀국한 후 ①승인 기간 내 활동 복귀 불가 또는 ② 질병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된 경우

[첨부기]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제도 관련 기타 안내

- 현행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 대비 KOICA 프로젝트 봉사단(8기) 파견 사업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
 - 조기귀국: 불가능
 - 활동물품비: 미지급
 - 소속기관 변경: 불가능(다만, 한 사업에 여러 기관 활동이 있으면 가능)

- KOICA 프로젝트 봉사단(8기)은 단원 계약 예정일(=국내교육 입소일 / 사업별 상이) 기준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을 따름. 끝.